

한불조약 이후(1886~1910)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갈등과 그 특징*

- 전북지역 敎案을 중심으로

서종태**

국문초록

1886년 한불조약의 체결로 프랑스 선교사들은 치외법권을 누리며 자유롭게 전교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조선 천주교를 대표하는 뮈텔(Mutet) 주교가 1895~1903년까지 왕실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여, 천주교회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그 결과 이전에 지역사회와 격리되었던 전북지역 천주교회가 한불조약 이후 지역사회와 서로 마주보며 지내게 되어, 상호 분쟁이 빈발해 교안이 자주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안은 51건으로, 전기(1886~1894)와 후기(1904~1910)보다 중기(1895~1903)에 빈발했다. 교안의 원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경제적인 문제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해, 전국 단위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난다. 그러나 시기별로 나눠 보면, 전기와 후기에는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중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전국 단위의 분석 결과와 같다. 교안의 전개 양상도 전국 단위의 분석 결과와 같이 전기와 후기에는 천주교회가 지역사회에 압도당했고, 중기에는 천주교회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 지역사회가 천주교회에 의해 압도당했다

주제어: 교안, 전북지역 교안, 교안의 유형, 교안의 원인, 교안의 전개양상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4S1A5B8063617)임.

**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한국사 전공).

1. 머리말

정부가 천주교를 금지하던 시기에는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면 정부의 탄압을 피하고 자유롭게 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대부분 깊은 산중으로 이주하여 교우촌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므로 ‘박해시대’에는 천주교회와 지역사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된 상태로 지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와 지역사회는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886년 韓佛條約 이후 선교사들의 전교활동과 신자들의 신앙 생활이 묵인되면서 산중의 교우촌에 살던 신자들이 점차 평야지대로 이주하게 되고, 비신자 마을에 살다가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어도 그대로 비신자들과 섞여 살면서 드러내 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천주교회와 지역사회는 수시로 마주치게 되었다.

이렇게 수시로 마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전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측과 지방관, 지방 지배세력, 지방 주민 사이에 분쟁이 빈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분쟁을 외교 문제로 취급하여 해결된 사건을 教案¹⁾이라 한다. 이 교안은 1886년 한불조약 이후부터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할 때까지 발생한 사건이지만 대한제국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교안은 1886년부터 대한제국기까지의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런데 전북지역 교안에 대해서는 韓末의 교안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거나²⁾ 관·민이 선교사나 천주교 신자를 공격한

-
- 1) ‘教案’이란 동양 전통 사회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박해정책이 지양되며 자유정책으로 이행되는 시기에 신앙생활과의 연관에서 야기되는 분쟁과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외교적 절충을 아울러 표현하는 역사용어이다(이원순, 『朝鮮末期社會의 對西敎問題 研究-教案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5, 역사교육연구회, 1973; 『조선말기사회의 ‘교안’ 연구』, 『한국천주교회사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본 연구에서는 선교 일선에서 발생된 교회 측과 지방관, 지방 지배세력, 지방 주민 사이의 대립과 충돌 사건 모두를 교안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검토하기로 한다.
- 2) 이러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이원순, 앞의 논문; 박찬식, 『韓末 教案과 敎民條約 -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회사 연구』 27,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박찬식, 『韓末 天主敎會의 성격과 教案』, 『교회사 연구』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근대 천주교회의 성격과 教案의 발생』, 『한국 근대 천주교

사건과 敎弊 사건을 연도별로 정리한 연구³⁾가 있을 뿐, 전북지역 교안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교안 자료를 이용하여 1886년부터 1910년까지의 전북지역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갈등과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1886년 한불조약 이후 천주교회의 위상과 전북지역 천주교회의 변화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전북지역 교안의 전개와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천주교회의 위상과 전북지역 천주교회의 변화

2.1 천주교회의 위상

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한 조선 정부는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이어 쇄국정책의 상징이었던 ‘斥和碑’를 철거하여 문호개방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런 다음 1883년 영국·독일과, 그리고 1884년 이태리·러시아와 잇달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이어 1886년에 프랑스와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886년 5월부터 한불 두 나라 대표가 만나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되었는데, 신앙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여기는 프랑스 측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문을 조약에 꼭 넣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를 국가의 권리로 여기는 조선 정부가 반대여론을 의식해 이를 끝까지 반대하여 전교의 자유를 암시하는 조항을 넣는 선에서 타협을 보아 마침내 1886년 6월 4일 한불수호통상조약을 맺었으며, 1887년 5월 30일 비준되었다.⁴⁾

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3) 김진소, 『전주교구사』 I, 도서출판 빅벨, 1998, 607~683쪽.

4) 한불조약의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최석우, 「한불조약과 신교 자유」, 『金聲均教授華甲記念論叢』, 한국사학회, 1969; 「한불조약과 신교자유」, 『한국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최종고, 「한국에 있어서 종교자유」, 『한

이러한 한불조약의 체결로 프랑스 선교사들은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護照(여권)를 지니고 조선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에서 언제든지 원조와 지원을 받으며 언어·문자·과학·법학·기예를 연구하거나 [學習] 가르칠 [敎誨]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조선의 관리가 조선의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영사관에 인도되어 프랑스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물론 한불조약에는 가르치는 [敎誨] 내용에 천주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교의 자유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프랑스 측은 가르치는 [敎誨] 내용에는 호의적으로 해석할 때 천주교 교리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려 하였고,⁵⁾ 조선 측도 이를 묵인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은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전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전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방의 관장들에게 한불조약의 내용이 주지되지 않아 선교사들이 전교활동을 하는 일선에서 조약이 얼마 동안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였다. 즉, 1887년 10월 덕원 부사 李重夏가 한불조약이 공지되지 않아 그 내용을 모르고 호조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드게트(Deguette, V. M. 崔東鎭) 신부를 서울로 강제 추방을 하여 한불조약을 위반하는 물의를 빚었다.⁶⁾

또한 한불조약이 비준된 뒤에도 프랑스 선교사들과 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인 입장은 한동안 계속 유지되었다.⁷⁾ 즉, 블랑(Blanc, G. M.

적 보장과정」, 『교회사 연구』 3, 한국교회사연구원, 1981; 박일근, 「한불조약 체결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86; 이원순, 「한불조약과 종교자유의 문제」, 『교회사 연구』 5, 한국교회사연구원, 1987; 노용필, 「천주교의 신앙 자유 획득과 선교 자유 확립」, 『교회사 연구』 30, 한국교회사연구원, 2008.

5) 최석우, 앞의 논문, 205쪽.

6) 최석우, 「개화기의 천주교회」,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원, 1982, 170~173쪽.

7) 이에 대해서는 노용필, 앞의 논문, 159~161쪽 참조.

J. 白圭三) 주교는 1887년 한불조약이 비준된 뒤 주교관과 자신을 보좌하는 성직자들의 숙소, 성당, 인쇄소, 학교, 고아원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중현 언덕의 대지를 매입하여 정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1888년 1월 조선 정부는 돌연 중현 기지의 소유권을 억류하였다. 이에 불랑 주교는 교회가 합법적으로 매입한 소유권이므로 이런 처사는 부당하다고 러시아 공사를 통해 정부에 항의하였다.⁸⁾

그러나 외무독관 趙秉式은, 첫째 그 땅이 列王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永禧殿의 主山脈을 이루고 있으므로 국유지이고, 둘째 그 언덕이 영희전을 내려다보고 있어 산의 허리를 파괴함으로써 영희전의 수호신을 어지럽히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그러한 작업은 국법으로 금하는 것이니 신속히 공사를 중지할 것이고, 그 대지의 구매가격은 한성부를 통해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불랑 주교는 그것이 국유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 회신을 보냈다.⁹⁾

그런데 외무독관은 1887년 4월 22일 러시아 공사 웨베르(Waeber, K. 韋貝)에게 공문을 보내 “프랑스 신부들이 그들이 눈여겨보았던 자리에 학교와 교회를 세울 의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서 최근에 맺은 조약의 항목 중에는 어떤 종류의 학교나 어떤 종류의 천주교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명령을 받았거나 조약에 언급되어 있는 것 외에는 어떤 새로운 종교나 어떤 교육기관이든 중지시킬 것이며, 왕국의 영토 내에서도 서울의 성안에서나 이런 종류의 기관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또 “더군다나 확실한 소식통에 의해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인도 마찬가지로, 전하의 백성들을 천주교 교단에 끌어들이기 위해 유혹하고 권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권고에 대해 끝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¹⁰⁾

8) 최석우, 앞의 논문, 176~178쪽.

9) 최석우, 앞의 논문, 177~178쪽.

10) 『프랑스외무부문서』 2, 『가톨릭에 관해 프랑스 공사와 조병식과 갖은 대담 내용』

1888년 6월 부임한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는 이와 같이 프랑스 선교사들과 천주교에 대해 적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외무독판 조병식의 공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조병식을 면담하여 그 문제를 따졌다. 즉, 콜랭 드 플랑시가 종교의 선택은 각자 취향에 따라 유교이든 천주교이든 적합한 종교를 받아들일도록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하자, 조병식이 자신의 생각도 그렇다고 하면서 “당신은 몇 년 전부터 천주교인들이 쫓기는 몸이 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콜랭 드 플랑시가 당신 생각이 그러한데 왜 공문에서 그런 언급을 했느냐고 따지자, 조병식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런 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수습하여,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¹¹⁾

하지만 명동 성당 땅 문서는 콜랭 드 플랑시 공사가 오랫동안 중재한 끝에 1890년에 가서야 겨우 천주교 측에 반환되었다. 그러자 불랑 주교는 이 사건을 천주교를 박해했던 정책의 전환과 천주교의 교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일보 전진하는 조치로 환영하였다.¹²⁾

그러나 정부가 천주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1895년부터이다. 즉, 1895년 1월 22일(양), 1884년 갑신정변 때 처벌된 金玉均, 洪英植 등의 죄명을 씻어 주거나 복권시켜 주면서 1886년 병인박해 때 처형된 천주교 신자들인 南鍾三과 洪鳳周 등의 죄명을 씻어 주었다.¹³⁾ 뮈텔(Mutel, G. C. M. 閔德孝) 주교는 이들에 대한 신원은 공적인 박해시대가 마침내 그 막을 내리는 것이며,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데 완전한 자유가 부여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조치로 받아들였다.¹⁴⁾

또한 조선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뮈텔 주교는 1895년에 접어들어 조선

(1888년 7월 6일), 국사편찬위원회, 2003, 35쪽.

11) 『프랑스외무부문서』 2, 『가톨릭에 관해 프랑스 공사와 조병식과 갖은 대담 내용』 (1888년 7월 6일), 34~38쪽.

12) 『서울교구연보』(I), 1890년도 보고서, 명동천주교회, 1984, 87쪽.

13) 『국역 고종실록』 31년 12월 27일; 『서울교구연보』(I), 1895년도 보고서, 164쪽.

14) 『서울교구연보』(I), 1895년도 보고서, 164쪽.

왕실로부터 정치적 조언자로 주목을 받았다.¹⁵⁾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조선 왕실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왕과 왕비의 측근인 洪啓薰이 1895년 4월 20일 뫼텔 주교를 찾아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홍계훈은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면서 일본이 계속 주인 행세를 하며 조선에 머무를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뫼텔 주교는, 그것은 거의 유럽의 열강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다.¹⁶⁾ 이러한 뫼텔 주교의 정치적 조언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홍계훈은 프랑스 공사관 主事 李寅榮(베드로)의 조언에 따라 왕이 원할 때마다 뫼텔 주교를 만나 정치적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뫼텔 주교를 궁내부의 관직인 왕세자의 프랑스어 선생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¹⁷⁾

이렇게 왕실의 정치적 조언자로 주목을 받던 뫼텔 주교는 高宗의 요청으로 1895년 8월 25일 처음으로 고종을 알현하게 되었다. 이때 이야기가 천주교 박해에 이르자, 고종은 “나도 잘 알고 있소. 더구나 천주교는 내가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았소. 그 점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소.”라고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하지만 일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었소.”라고 덧붙여, 1886년 병인박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¹⁸⁾

이어 고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선 왕국의 이익을 위해 힘자라는 대로 도와주겠느냐고 묻자, 뫼텔 주교는 자신의 힘이 닿는 한 언제나 조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자 고종은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러기에 언제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중대한 일이 생기면 주교님의 그 선의와 헌신에 호소하려 하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왕

15)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김태웅, 『조선말·대한제국기 뫼텔 주교의 정국 인식과 대정치권 활동』, 『교회사 연구』 37,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16) 『뫼텔 주교 일기』 I, 1895년 4월 20일,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315~316쪽.

17) 『뫼텔 주교 일기』 I, 1895년 6월 11일, 335쪽.

18) 『뫼텔 주교 일기』 I, 1895년 8월 28일, 362~363쪽; 『서울교구연보』(I), 1895년도 보고서, 165쪽.

세자도 뮌텔 주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고종이 한 말을 되풀이하자, 뮌텔 주교는 거의 같은 말로 같은 확신을 주었다.¹⁹⁾

1895년 10월 8일 閔妃弒害 사건이 일어나 왕실과 뮌텔 주교를 연결해 주던 홍계훈이 피살된 뒤에도, 뮌텔 주교는 여전히 왕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잇달아 고종을 알현하였다. 그리고 1896년 2월 11일 俄館播遷이 단행될 때에도 뮌텔 주교는 고종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였다. 즉, 고종이 러시아에 몸을 내맡기는 것을 몹시 망설이면서 뮌텔 주교에게 러시아 공사의 제안에 대해 그의 의견을 물었는데, 뮌텔 주교가 그 제안을 은밀히 받아들이라고 조언해 주어 마침내 아관파천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²⁰⁾ 이러한 뮌텔 주교의 정치적 조언은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전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이러한 역할 덕분에 뮌텔 주교의 정치적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²¹⁾

이처럼 뮌텔 주교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자, 1896년 2월 15일 宮內府 勅任官 1등인 閔泳駿이 공금 횡령 문제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뮌텔 주교에게 도움을 청하였다.²²⁾ 또한 해직될 위기에 처한 법무 대신 趙秉式이 뮌텔 주교에게 비서관을 보내 자신의 보호를 청하기도 하였다.²³⁾ 아울러 1896년 10월 학부 대신 申箕善이 교과서로 집필한 『儒學經緯』에서 천주교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아 다른 나라 공사들과 연대하여 신기선을 해직하도록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²⁴⁾

이렇게 뮌텔 주교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그는 1896년 10월 29일부터 1897년 1월 22일까지 전북지역 천주교회의 公所들을 순방하였다. 이때 전라도 행정 당국은 뮌텔 주교가 순회할 고을의 길을 닦고 단장하는가 하면, 감사와 군수들이 뮌텔 주교를 정중하게 예방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천주교를 돕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²⁵⁾ 또한

19) 『뮌텔 주교 일기』 I, 1895년 8월 28일, 364쪽.

20) 『뮌텔 주교 일기』 II, 1896년 1월 27일,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29쪽.

21) 김태웅, 앞의 논문, 104~112쪽.

22) 『뮌텔 주교 일기』 II, 1896년 2월 15일, 42쪽.

23) 『뮌텔 주교 일기』 II, 1897년 2월 6, 7일, 145~146쪽.

24) 김태웅, 앞의 논문, 108쪽.

뮈텔 주교의 행차도 천주교의 위세를 떨쳤다. 즉, 뮈텔 주교는 四人轎를 타고 앞에는 砲軍 한 쌍, 다음에 前陪 한 쌍, 다음에 童子 한 쌍, 뒤에 後陪 한 쌍이 따랐다. 그리고 수행하는 신부들에게는 전배·동자·후배 한 쌍씩, 그 뒤에 步輦가 수십 틀이요, 큰 말과 조랑말이 오륙십 필이요, 무수한 시종꾼이 따르고, 전주의 십리 사에는 내왕하는 행인의 발길마저 끊겼다.²⁶⁾

또한 이처럼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뮈텔 주교는 선교사들의 전교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안에 적극 대처하여 선교사들의 전교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신자들의 청원이 뮈텔 주교와 프랑스 공사관의 중재나 개입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교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²⁷⁾

그러나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계기로 2월 23일 한일의정서, 8월 22일 제1차한일협약 등의 체결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고종이 정치적 실권을 상실함에 따라 뮈텔 주교의 정치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이 끝나, 황실과의 협조 관계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천주교회는 더 이상 정부의 보호나 후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일제의 규제와 압박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1905년 정교분리법이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되어 1801년에 맺어진 정교협약이 폐기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선교사들과 관련된 사무만을 처리하고 나머지 사항을 제외시켰다. 이 때문에 이전과 같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²⁸⁾ 또한 1905년 을사늑약으로 프랑스 공사관이 총영사관으로 위상마저 낮아졌다. 그리하여 총영사관은 선교의 보호보다는 프랑스 국익의 보전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이전과 달리 뮈텔 주교의 요청을 방관하거나 무시하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여러 현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에 이르렀다.²⁹⁾

25) 김진소, 앞의 책, 489~490쪽.

26) 『전라도 전교 약기』, 『전통 본당 100년사 자료집』 제1집, 천주교 전동 교회, 1992, 205쪽.

27) 김태웅, 앞의 논문, 110쪽; 박찬식, 『한말 교안과 교민조약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61~65쪽.

28) 김태웅, 앞의 논문, 114~115쪽.

이와 같이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규제와 압박을 받게 되고, 프랑스 공사관이 총영사관으로 격하된 데다 정교협약의 폐기로 프랑스 정부마저 한국천주교회의 여러 현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뫼텔 주교는 천주교회의 당면한 현안이나 각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교안들을 해결하는 데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한국천주교회는 대한제국 정부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하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당면한 여러 난관들을 헤쳐 나가야 했다.³⁰⁾

이러한 가운데 1905년에 뫼텔 주교는 전라도 교회를 두 번째 사목 방문을 하였다. 10월 18일 목포 본당에서 시작된 그의 사목 방문은 전남 지역 공소를 차례로 순시한 뒤, 11월 18일 정읍 신성리 본당을 비롯하여 전북지역 공소와 본당을 차례로 방문하며 성사를 집전하고 여러 건의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까지 한 다음, 1906년 1월 5일 서울로 돌아왔다.³¹⁾

2.2 전북지역 천주교회의 변화

천주교가 정부의 탄압을 받던 시기에는 선교사들이 공소를 순방할 때 서양 사람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항상 상복 차림을 하고 다녀야 했으며, 또한 비신자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밤중에 은밀하게 공소를 방문하여 성사를 집전한 뒤 날이 새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만 했다. 또한 박해시대에는 천주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정부의 탄압을 피하고 자유롭게 守誠생활을 하기 위해 대부분 깊은 산골로 이주하여 교우촌을 이루며 살았다. 그렇지 않고 입교한 뒤에도 그대로 비신자들 속에 섞여 살게 되면 신자임을 숨기며 살아야 했다. 그러므로 박해시대에는 천주교회와 지역사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되어 있었다. 게다가 천주교를 믿는 것은 법

29) 김태웅, 앞의 논문, 115쪽.

30) 김태웅, 앞의 논문, 115쪽.

31) 『뫼텔 주교 일기』 III, 464~484쪽, 『뫼텔 주교 일기』 4,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15~16쪽; 김진소, 『천주교구사』 I, 496~501쪽.

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민이 선교사와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선교사와 신자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관·민의 박해를 天主의 섭리로 여겨 기꺼이 참아 받았다. 따라서 박해시대에는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충돌은 애당초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1886년 한불조약으로 종교의 자유가 묵인되면서 그 이후로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그 이전과 많이 변하여 서로 갈등을 빚거나 충돌할 여지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점은 한불조약 이후 선교사들이 성직자 복장인 수단을 입고 대낮에 자유롭게 사목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에 거주하던 블랑 주교는 1888년 10월 초부터 수단을 입고 대낮에 서울 거리를 자유롭게 왕래하기 시작하였다.³²⁾ 그리고 1891년부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서도 선교사들이 성직자 복장을 하고 다녔으며, 아울러 지방에서도 변화가 차차 일어나 몇 해만 지나면 모두 성직자 복장을 하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³³⁾

전북지역에서는 1891년부터 선교사들이 밤중이 아닌 대낮에 服事, 영접꾼 등을 대동하고 공소 순방을 다녔다. 즉, 금구 배재 본당의 베르모렐(Vermorel, J. 張若瑟) 신부는 1891년 가을에 복사 朴齊元 등을 대동하고 부안 무내미(웅기점) 공소를 방문하여 대낮에 판공성사를 치렀다.³⁴⁾ 또한 베르모렐 신부의 후임으로 배재 본당에 부임한 조조(Joze, M. 趙得夏) 신부는 1893년에 말을 타고 마부, 복사 박제원, 영접꾼 등을 대동하고 대낮에 순창의 내동 등의 공소를 순방하였다.³⁵⁾

한편 라크루(Lacrouts, M. 具瑪瑟) 신부도 1895년에 본당을 이전하려고 수류에 구입해 놓은 집을 둘러보러 갈 때 교우 7, 8명, 복사 박제원, 마부 등을 대동하고 말을 타고 갔다.³⁶⁾ 뮌텔 주교도 1896년에 전북지역

32) 『서울교구연보』(I), 1888년도 보고서, 73쪽.

33) 『서울교구연보』(I), 1891년도 보고서, 103쪽.

34) 『전동 본당 100년사 자료집』 제1집, 176~177쪽.

35) 『전동 본당 100년사 자료집』 제1집, 179~183쪽.

36) 『전동 본당 100년사 자료집』 제1집, 206쪽.

공소를 순방할 때에 말을 타고 다니기도 했으며,³⁷⁾ 페네(Peynet, J. C. 裴嘉祿) 신부도 1905년에 공소 관공성사를 치르기 위해 마부와 복사를 대동하고 말을 타고 갔다.³⁸⁾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말을 타고 다다니는 것은 이미 1888년부터 시작되었다. 즉, 1888년 5월 그믐께 베르모렐 신부가 말을 타고 裴京集 회장의 인도로 라푸르카드(Lafourcade, A. 羅亨默) 신부가 사경을 헤매고 있던 고산 빼재에 도착하였다.³⁹⁾

그런데 이와 같이 대낮에 복사, 마부, 영접꾼 등을 대동하고 말을 타고 공소 순방을 다니는 선교사 일행은 천주교나 서양 선교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을 자극하여 교안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조 신부가 1893년에 관공성사를 치르기 위해 말을 타고 마부, 복사 박제원, 영접꾼 등을 대동하고 대낮에 순창의 내동 앞을 지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조조 신부에게 양국 놈이니, 오랑캐 놈이니, 천주학을 가르치려 다니는 놈이니, 저 놈을 때려 죽이자느니 하며 욕설을 하였던 것⁴⁰⁾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한불조약 이후에 신자들이 비신자들 마을에 섞여 살면서 드러내 놓고 신앙생활을 함에 따라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섞여 사는 마을에도 공소가 설립되어 천주교회와 지역사회가 서로 마주보며 지내게 되었다. 『서울교구연보』(Ⅰ) 1891년도 보고서에 “거의 모든 천주교인들이 지금은 비신자 이웃에게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한 것⁴¹⁾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1891년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비신자들 마을에 섞여 살면서 드러내 놓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 거의 모두 비신자 이웃에게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하여 점차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섞여 사는 마을에도 공소가 설립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1888년부터 이미 비신자들 마을에 공소가 설립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 진안 어은동 공소는 1888년에 설립되었는데,⁴²⁾

37) 『뫼텔 주교 일기』 Ⅱ, 122쪽.

38) 『전동 본당 100년사 자료집』 제1집, 179쪽.

39) 『전동 본당 100년사 자료집』 제1집, 174쪽.

40) 김진소, 앞의 책, 674쪽.

41) 『서울교구연보』(Ⅰ), 1891년도 보고서, 103쪽.

1886년 당시만 해도 완전히 비신자들만 사는 마을이었으나, 4년이 지난 1892년 당시에는 신자들이 비신자들을 압도하게 되었고, 1896년 당시에는 단 한 집만 제외하고는 모두 신자들이라고 한 사실⁴³⁾로 보아 1888년 설립 당시에는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섞여 사는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88년에 설립된 태인 문재 공소는 1889년 당시 비신자들 가운데에 있는 작은 동네였으며,⁴⁴⁾ 1888년에 설립된 태인 박실 공소는 1889년 당시 비신자들이 많았다.⁴⁵⁾ 또한 1888년에 설립된 함열 상만이 공소는 1891년 당시 베르모텔 신부가 “비신자 때문에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섞여 사는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⁶⁾ 아울러 1891년에 설립된 용안 함박재 공소는 1892년 당시 비신자들과 너무 가까이 있었고,⁴⁷⁾ 1893년에 설립된 정읍 한가락 공소는 1893년 당시 비신자들 가운데에 있었다.⁴⁸⁾

그런데 이와 같이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섞여 사는 마을에 설립된 공소는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마주보며 살게 되어 천주교와 서양 선교사에 대한 비신자들의 반감을 수시로 자극하여 교안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섞여 사는 진안 어은동 공소의 비신자 두 사람이 1888년에 천주교가 변성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아전을 찾아가 돈을 주고 매수하여 천주교 신자들을 요절내도록 종용한 것⁴⁹⁾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한불조약 이후 신자들이 점차 산간지역 교우촌에서 평야지역으로 이주해 간 점이다. 물론 한불조약 이후에도 초기에는 전북지역 천주교 신자들은 거의 모두 산간지역 교우촌에서 살았다.

42) 김진소 편,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1집, 박벨출판사, 1987, 22쪽.

43) 『위텔 주교 일기』 II, 125쪽; 김진소 편,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박벨출판사, 1987, 103쪽.

44) 김진소 편,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67쪽.

45) 김진소 편,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67쪽.

46) 김진소 편,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79쪽.

47) 김진소 편,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91쪽.

48) 김진소 편,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107쪽.

49) 김진소, 『전주교구사』 I, 757쪽, 위텔문서 1888년 5월 19일자 라푸르카드 신부의 서한.

이러한 사실은 1890년 당시 전주 본당의 주임을 맡고 있던 보두네(Baudounet, F. X. 尹沙勿) 신부가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꽤 좁은 지역에 모여 삽니다. 게다가 담배 농사를 하기 때문에 커다란 외교인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평야 지방에 내려가고 장에 가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또 여행을 하는 것은 남자들뿐입니다.”라고 보고한 것⁵⁰⁾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은 점차 산간지역 교우촌에서 평야지역으로 이주해 갔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교구연보』(I) 1895년도 보고서의 다음 내용이 참고 된다.

지난해 신자들은 박해 때문에 높은 산속으로 은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오히려 평야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대개는 그들의 옛 고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들 있습니다.⁵¹⁾

위의 내용에서 주목이 가는 대목은 1895년 당시로부터 몇 년 전부터 산간 교우촌에 살던 신자들이 평야로 내려오고 있다고 밝힌 점이다. 물론 위의 내용은 뒤테르트르(Dutertre, L. P. 姜良) 신부가 사목을 담당하고 있던 강원도 伊川에 있는 산간 교우촌의 사정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1886년 한불조약으로 종교의 자유가 목인된 결과이므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전북지역에서도 1895년 당시로부터 몇 년 전부터 신자들이 점차로 산간 교우촌에서 평야로 거처를 옮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이 산간 교우촌에서 평야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추세는 1899년에 그들의 주된 농작물인 담배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되재 본당의 미알롱(Mialon, J. L. 孟錫浩) 신부가 1899년 당시 교우촌의 몰락상을 이야기하면서 “금년에는 이사 간 집이 많다. 담뱃값이 떨어져 담배농사를 포기하고 벼농사를 지으려 평야

50) 『서울교구연보』(I), 1890년도 보고서, 97쪽.

51) 『서울교구연보』(I), 1895년도 보고서, 169쪽.

부로 갔다. 그래서 신자가 줄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⁵²⁾

또한 『서울 교구 연보』(I) 1903년도 보고서에 “예전에는 수입이 좋은 담배 재배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산에 들어가 유복하게 살았으나, 오늘 날은 사정이 달라, 미알롱 신부는 그의 구역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불평 합니다. 이제는 교우들이 평야에서 벼농사를 하고 살아갑니다.”라고 하였다.⁵³⁾ 그리고 수류 본당을 맡고 있던 페네 신부의 1908년도 보고에 “1907~1908년 사이의 성사 집전은 특히 산간 지방의 교우들에게 어려웠습니다. 수확이 아주 보잘 것 없었고, 신자들의 주된 농작물인 담배도 형편없는 가격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⁵⁴⁾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산간 교우촌의 신자들이 담뱃값 하락으로 인해 평야지역으로 이주하여 벼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추세는 1908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⁵⁾

이와 같이 산중 교우촌에서 평야지역으로 이주해 가고자 하는 것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나 교회 당국도 만찬가지였다. 이러한 사실은 배재 본당이 수류로 이전하는 과정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즉, 1895년에 조조 신부의 후임으로 배재 본당에 부임한 라크루 신부는 심산궁곡에 있을 마음이 나지 않았다. 또한 배재 신자들도 산중인 배재를 떠나 들녘으로 이주하기를 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뮌텔 주교 역시 라크루 신부가 부임하기 전 다른 곳에 집을 사서 본당터를 옮기도록 일렀다. 그리하여 라크루 신부는 들녘을 앞에 두고 있는 수류에 집을 한 채 구입하여 본당을 수류로 이전하였다.⁵⁶⁾

그런데 이처럼 신자들이나 본당이 이주해 간 평야지역에는 어디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신자들과 섞여 사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웠는데, 대부분의 원 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금교 정책의 영향으

52) 김진소 편, 『전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183쪽.

53) 『서울교구연보』(I), 1903년도 보고서, 323쪽.

54) 『서울교구연보』(II), 1903년도 보고서, 63쪽.

55) 담뱃값의 폭락으로 전북지역 산간 교우촌의 신자들이 평야지역으로 이주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김진소, 『전주교구사』 I, 737~738쪽 참조.

56) 『전동 본당 100년사 자료집』 제1집, 206~207쪽, 김진소, 『전주교구사』 I, 438~439쪽.

로 천주교와 서양 선교사에 대한 반감이 팽배하여 신자들이나 서양 선교사가 이주해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배재 본당이 수류로 이주하려고 하자 그곳 원 주민인 이씨 양반이 “서양 선교사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함께 살 수 없으니,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데, 모두 한꺼번에 다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서양 선교사를 못 오도록 막을 수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걱정했던 것⁵⁷⁾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산중 교우촌 신자들의 평야지역으로의 이주는 교안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한불조약 이후에 지역 본당이 설립되어 신부가 상주하는 성당에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불조약으로 종교의 자유가 묵인됨에 따라 각지에 본당이 잇달아 설립되었는데, 전북지역에는 1889년부터 1909년까지 전주 본당, 금구 배재(수류) 본당, 고산(되재) 본당, 여산 나바위 본당, 진안 어은동 본당, 정읍 신성리 본당 등 모두 6개의 본당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전주 본당은 1889년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섞여 사는 소양면 대성동 공소에 세웠다가 1891년 신자가 한 명도 없는 전주 남문 밖에 집을 마련하여 府中으로 이전하였다.⁵⁸⁾ 배재(수류) 본당은 1889년 금구의 깊은 산중 공소인 배재에 세웠다가 1893년 신자가 한 명도 없는, 들녘을 앞에 두고 있는 금구 수류로 이전하였다.⁵⁹⁾ 고산(되재) 본당은 1891년 고산의 깊은 산골 공소인 차독백이에 세웠다가 1893년 역시 깊은 산골 공소인 되재로 이전하였다.⁶⁰⁾ 나바위 본당은 1897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강경을 염두에 두고 강경과 진매없는 여산 나바위 공소에 세웠고,⁶¹⁾ 어은동 본당은 1900년 진안의 깊은 산골 공소인 어은동에 세웠다.⁶²⁾ 신성리 본당은 1903년 정읍 읍내에서 10리가량 떨어져 있는 산기슭의 전채

57) 『전동 본당 100년사 자료집』 제1집, 206쪽; 김진소, 『전주교구사』 I, 439쪽.

58) 김진소, 『전주교구사』 I, 422~424쪽.

59) 김진소, 『전주교구사』 I, 435~441쪽.

60) 김진소, 『전주교구사』 I, 442~443쪽.

61) 김진소, 『전주교구사』 I, 451~453쪽.

62) 김진소, 『전주교구사』 I, 459~461쪽.

30호 중에 교우집이 6집밖에 안 되는 신성리 공소에 세웠다.⁶³⁾

이와 같이 전북지역에 설립된 6개의 본당들은 고산(퇴재) 본당이나 진안 본당과 같이 신자들이 많은 깊은 산골의 공소에 설립된 경우도 있지만, 전주 본당이나 배재(수류) 본당과 같이 공소에 설립되었다가 신자가 한 명도 없는 전주 부중이나 들녘을 앞에 둔 수류로 이전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나바위 본당과 같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강경을 염두에 두고 그 옆의 공소에 세운 경우도 있고, 신성리 본당과 같이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섞여 사는 공소에 세운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 본당이 설립된 뒤 미사의 은혜를 입기 위해 신자들이 사방에서 성당 주변으로 대거 이주해 와 본당이 들어선 곳들은 큰 교우 집단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자들이 한 명도 없는 바깥수물에 본당이 세워진 뒤 미사에 굶주린 교우들이 미사의 은혜를 입기 위해 사방에서 성당이 세워진 바깥수물로 이사해 와, 바깥수물과 안수물이 완전한 교우촌을 이루었던 수류 본당의 사례⁶⁴⁾로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주 본당이나 배재(수류) 본당과 같이 신자들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본당을 이전한 경우는 앞에서 알아본 배재(수류) 본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 주민 대부분이 천주교와 서양 선교사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섞여 사는 공소에 설립된 신성리 본당도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마주보고 살게 되어 천주교와 서양 선교사에 대한 비신자들의 반감을 수시로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신자들의 본당 주변으로의 대거 이주도 원 주민들의 반감을 부채질하였을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지역본당의 설립도 교안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전북지역 천주교회는 한불조약 이후 이전의 지역사회와 격리되었던 상황과 달리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변화는 교안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변화로 발생한 교안의 전개와 그 특징에 대해서는 절을 달

63) 김진소, 『전주교구사』 I, 464~466쪽.

64) 김진소, 『전주교구사』 I, 440~441쪽.

리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3. 전북지역 교안의 전개와 그 특징

3.1 교안의 시기별·지역별 전개 양상

1886년 한불조약 이후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천주교 측과 지방관리, 지방 지배세력, 지방 주민 사이의 분쟁인 교안이 전북지역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1886년부터 1909년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51건의 교안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그 일람표를 만들면 <표 4>와 같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51건의 교안은, 앞에서 알아본 1886년 한불조약 이후 천주교회의 위상 변화와 뒤에서 알아볼 전북지역 교안의 유형을 고려할 때, 전기, 중기, 후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뫼텔 주교가 조선 왕실의 정치적 조안자로 활동하여 천주교회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선교사들이 洋大人이라는 세도를 부리기 시작한 1895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 그리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한일의정서, 제1차한일협약 등을 잇달아 강제로 체결해 침략을 강화해 감에 따라 고종이 실권을 상실하여 황실의 정치적 조안자로서의 뫼텔 주교의 역할이 종식되는 1904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886년부터 1894년까지를 전기, 1895년부터 1903년까지를 중기, 1904년부터 1909년까지를 후기로 하여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전국의 교안을 정리하고 분석해 시기를 구분한 박찬식의 연구 결과⁶⁵⁾와도 대체로 합치된다는 점에서

65) 박찬식은 1886년 이후 발생한 교안이 주로 1890년대 전반기에 빈발하다가 1890년대 중반기에 줄어들고, 1890년대 후반으로부터 1900년대 초까지 교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다가 1904년 이후로 교안이 거의 종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886년부터 1896년까지를 첫 번째 시기, 1897년부터 1903년까지를 두 번째 시기, 1904년부터 1909년까지를 세 번째 시기로 구분하였다(박찬식, 앞의 책, 55~56쪽).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전북지역 교안 51건의 시기별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전기인 1886년부터 1894년까지 발생한 사안이 17건, 중기인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발생한 사안이 20건, 후기인 1904년부터 1909년까지 발생한 사안이 14건으로 나타난다. 세 시기 중 중기에 교안이 가장 빈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북지역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분쟁이 뮌텔 주교의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았던 중기에 가장 심하게 발생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박찬식이 전국의 교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합치된다.⁶⁶⁾

다시 전기에 발생한 사안 17건을 살펴보면(<표 1> 참조), 1891년 베르모델 신부가 부안 무내미 공소에서 가을 판공성사를 치를 때 신자를 구타한 면주인을 복사 박제원이 붙잡아 매어놓고 혼쫓 낸 사안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역사회의 관·민이 천주교회를 공격한 사안들이다. 그 중 官長·鄉吏·鄉任이 천주교회를 공격한 사안이 4건이다. 즉, 1888년 천주교가 번성하는 것을 싫어하는 주민들에게 매수된 아전들이 진안 어은동 공소를 습격하여 신자들을 구속하고 가산을 몰수한 사건, 1888년 라푸르카드 신부 담당 구역의 어느 관장이 돈이 많은 공소회장을 구금하고 석방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사건, 1890년 천주교도와 비신자로 구성된 용안 군민이 수탈을 일삼는 용안 군수에 항거하여 관아를 공격하자 천주교도를 그 주모자로 구금한 사건, 1890년 전주 소양면 약바우의 風憲 咸汝佐가 예비신자 박문검을 추방하고 전답의 곡식을 탈취하려 한 사건 등이다.

校卒·향임·民人(일반 평민)이 선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을 준 사안이 3건이다. 즉, 1890년 전주 소양면 약바우의 풍헌 참여좌와 대성동의 풍헌 崔鳳錫이 모두네 신부에게 갖은 욕설을 일삼고 폭언을 한 사건, 1892년 모두네 신부가 교우 최재우에게 맡긴 학방설립기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최 감찰이 최재우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그의 가족과 친척

66) 박찬식, 앞의 책, 61~65쪽.

들을 폭행하고, 진영 교졸들이 사제관에 침입하여 신부에게 욕설하고 복사를 구타한 사건, 1893년 순창 내동의 주민들이 조조 신부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을 준 사건 등이다.

민인이 천주교도를 공격한 사안이 4건이다. 즉, 1890년 고산 석장리의 천주교도들이 서양 신부를 마을에 끌어들여 접대하고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마을에서 추방하려 한 사건, 1891년 순창 복흥면에 사는 鄭學采 3형제가 천주교도라는 이유로 지방민의 모함을 받아 투옥되고 재산을 빼앗긴 사건, 1892년 고산 먹구니 공소 천주교도들이 비신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를 당한 사건 등이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천주교회를 공격한 사안이 6건이다. 즉, 전주 보두네 신부의 사제관을 약탈하고 신학생 김 토마스에게 총상을 입힌 사건, 전주 천주교도의 집 5채를 불태운 사건, 금구 배재 본당의 조조 신부가 여러 번 습격을 당하고 총으로 위협을 받은 사건, 용안 돈다산에 사는 박제원의 집을 습격하여 聖敎書 등을 불 지르고 식구들을 쫓아낸 사건, 고산 되재 성당을 습격하여 성화들과 예수성심상을 파괴한 사건 등이다. 1894년에 일본과 서양을 멸사하자는 구호를 내세운 동학농민운동이 고부에서 일어나 전북지역 전역을 휩쓴 데다 천주교 신자들이 농민군에 가담하기를 거부한 탓에 농민군들은 천주교 신자들을 가장 큰 원수로 여겨,⁶⁷⁾ 전북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천주교회를 공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중기에 발생한 사안 20건을 살펴보면(<표 1> 참조), 1900년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한 중국 義化團 사건이 전해지면서 8월부터 평소 천주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생, 양반, 농민군 출신들이 여러 차례 비밀집회를 열고 반란을 선동하는 가운데, 고성리에 사는 이 진사와 송 진사의 아들 등이 교우들을 잡아들이거나 마을에서 추방한 사건, 1902년 진산의 이방 하낙두 등이 천주교도들로부터 55냥 내지 60냥 하의 滑石을 백동전 31냥에 매석한 사건, 1903년 천주교도 박씨 집안의 묘

67) 『서울 교구 연보』 (1), 1894년도 보고서, 160쪽.

지가 있는 산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 사건 등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선교사의 위세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그 중 선교사의 위세로 천주교회가 관·민에게 사적 형벌을 가한 사안이 5건이다. 즉, 1895년 5월 배재 본당의 라크루 신부가 본당을 이전할 집을 구경하려고 복사 박제원 등과 수류에 갔을 때, 그 동네 이씨 양반이 선교사를 배격한다는 말을 듣고서 이전할 집의 나무 하나를 이씨 양반이 베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를 불러오게 하여 마당에 꿰어앉혀 놓고 복사 박제원이 혼쭐을 낸 사건, 1896년 전주 본당의 보두네 신부가 1888년 현감으로 있으면서 천주교를 신봉한다는 죄로 어은동 신자 김동철을 구속하고 가산을 몰수했던 익산 군수 **李重益**을 사제관으로 불러 처단하도록 하여, 복사 **李春烈**이 이중익을 성당 앞뜰 오동나무에 거꾸로 매달고 잘못을 추궁한 사건, 1897년 진안의 천주교도 조원홍 등이 선교사의 위임장이라 하여 **屯監 差人**을 성당에 감금하고 조세의 납부를 거부한 사건, 1899년 여산 나바위 본당의 신자들이 강경 교우 **金致文**과 시비를 벌인 소금상 **趙興道**를 방에 가두고 명석말이를 하여 곤욕을 준 사건, 1901년 보두네 신부가 천주교도 **金智煥**과 비신자 **洪顯秀**의 **訟事**에 개입하여 홍현수의 종질을 사제관에 끌어들여 놓아 김지환이 4년간의 **賭租價**와 토지 문서를 강제로 탈취하게 하고서 그를 사제관에 숨겨놓고 체포를 방해한 사건 등이다.

교안의 전개 과정에서 선교사가 위세를 부린 사안이 5건이다. 우선 보두네 신부가 예비신자 박문겸·박이겸과 비신자 박주연의 **訟事**에 개입하여 1896년 12월 뮌텔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박주연과 결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라 감사가 파직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여, 마침내 감사 조민희가 파직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감사나 수령들이 선교사의 위세에 눌러 협조하는 사안이 여럿 발생하였다. 즉, 1897년 천주교도가 경작하는 토지를 진산 현감이 아전들과 공모하여 둔전답이라 하며 빼앗으려 하여, 보두네 신부가 전라 감사에게 공정한 처리를 잇달아 요구하고, 이어 뮌텔 주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감사가 두 교우를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내고 재산도 돌려주고 도조도 징수하지 않겠다고 회답했다. 그리고

1897년 태인에 사는 교우 이씨가 비신자 마을의 부자이며 세도가인 유씨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군수가 유씨 편을 들어 이씨와 그의 부모를 잡아들이게 하고, 데예(Deshayes, A. 趙有道) 신부가 진상을 알아보도록 관아에 보낸 두 교우를 구속하여, 데예 신부가 군수에게 그들의 석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접수를 거부하다가 전주에 나가 데예 신부에게 공문을 다시 보내 달라고 서한을 보내고, 전라 감사도 문제의 공문이 서울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청했다. 또한 1898년 용안에서 경작권 문제로 교우 청년을 폭행한 나씨 노인이 술을 마시고 밤에 변사하자, 나씨 노인의 아들과 친척들이 교우 청년을 살인자로 몰아 관아에 고발하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베르모텔 신부의 사제관에 불법 난입하여, 모두네 신부와 베르모텔 신부가 외교적 통로로 해결해, 외부대신이 전라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나씨 집안을 엄히 다스리도록 지시하였으나, 전라 감사와 용안 군수가 나씨 편을 들며 외부대신의 지시를 따라지 않다가, 모두네 신부와 베르모텔 신부가 상경하자, 그때서야 용안 군수가 나씨 청년을 처벌했다. 아울러 1898년 진산 군수가 두 신문교우의 입교를 막고자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관아로 끌고 가 심하게 매질하여, 미알롱 신부가 외교적 통로로 해결하자, 1899년 진산 군수가 신부를 찾아가 용서를 청하면서 앞으로 교우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법대로 처벌하겠지만, 아무 잘못이 없을 때에는 절대로 교우들을 괴롭히지 않고, 천주교를 믿는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지역 천주교회의 공소를 순방한 뮌텔 주교의 위세와 관련된 사안이 2건이다. 즉, 1896년 11월 21일 뮌텔 주교가 강경 공소를 방문했을 때, 나바위에 사는 신자 羅永道가 그의 가족묘와 교우들의 묘소들이 있는 그의 산을 부여의 백 주사에게 빼앗기게 되어 이를 막다가 백 주사 측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어, 뮌텔 주교가 복사 박제원에게 주교의 편지를 여산 군수에게 전하도록 하여 해결한 사건, 1897년 1월 15일 뮌텔 주교의 사목순방 행렬이 원평 장터에 도착하여 횃불을 주문하였으나, 주막 사람들이 이를 거절하여, 주교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주막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주교의 마부가 상처를 입게 되자, 뮌텔 주교가 복사에게 주교의 명함을 금구 군수에게 전하도록 하여 해결한 사건 등이다.

선교사의 위세를 이용하여 현실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사안이 4건이다. 즉, 1896년 금구의 黃處中과 朴士玉이 본래 동학을 하다가 귀화한 후 다시 천주교에 들어가 각처에 출몰하며 백성들을 침학한 사건, 1897년 전주의 천주교당 학도 金道允 등이 金河瑞가 마음대로 써버린 南原稅錢을 멀리 홍양까지 진출하여 김하서 족인에게 징수한 사건, 1898년 천주교도인 진산의 서리가 선교사의 위세를 이용하여 公錢을 횡령하고도 군수의 질책에서 벗어난 사건, 1901년 김제의 천주교도들이 사찰의 산목을 별목하여 군수가 금령을 내린 사건 등이다.

다음으로 후기에 발생한 사안 14건을 살펴보면, 1905년 정읍 신성리 본당 마을 신자들이 주민들에게 공격을 당한 사안 4건,⁶⁸⁾ 1905년 여산 군수 박항래가 교우들에게 향교와 문묘 보수비를 할당하여 납부토록 요구하자, 천주교 신자들이 교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면제해 주도록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불기를 맞은 사건,⁶⁹⁾ 1904년 1월 용안 안대동 교우촌에 동학농민군이 침입하여 쌀가게를 강탈하고 방화하여 25채 중 13채가 전소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⁷⁰⁾ 등 6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905년 이후 새로 등장한 지역사회의 세력들이 천주교회를 공격한 사안들이다.

68) 1905년 교우가 이웃 마을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 교우들이 밭 가운데로 난 길을 막자 마을의 주민들이 교우들과 싸워 강제로 길을 낸 사건, 신자들이 소작권을 빼앗으려 하는 주민들과 싸워 중상을 입은 사건, 마을의 주민 김춘화가 회장 배사 집을 납치한 뒤 한 밤중에 친척들과 성당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린 사건 등이다.

69) 천주교회에서는 문묘를 위해 헌금하는 것을 미신행위로 간주하여 신자들에게 헌금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군수는 신자들에게 문묘나 사직은 국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왕명에 따라 조선 백성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한다며 신자들을 잡아들이도록 했다. 이처럼 유교식 전례를 미신행위로 단죄하는 천주교회의 입장으로 인해 지방 지배세력과 충돌을 빚었다(김진소, 『전주교구사』 I, 653쪽).

70) 1903년 말부터 재봉기를 준비하는 동학농민군들이 도적질을 일삼아, 나바위 본당 주변의 부자들은 강경과 논산으로 피신하여 방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동학농민군이 조선 황제를 돕고 일본인과 서양인을 몰아내기 위해 상경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선교사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김진소, 『전주교구사』 I, 582쪽; 뮌텔 문서 1904-1, 1904년 2월 3일자 베르모델 신부 서한).

그 중 1905년 천주교도와 개신교도가 충돌한 사안이 4건이다. 즉, 2월 13일 개신교도인 최씨가 페네 신부의 길을 막고서 마부와 싸우고 신부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 11월 25일 사목순방 중인 뮌텔 주교 일행이 고부 덕천에 들어섰을 때 개신교도 김명숙의 형제가 페네 신부의 마부를 총대로 때려 교우들과 난투극을 벌인 사건, 12월 5일 태인 매계에 사는 崔重珍이 김명숙 형제와 같은 교인이라는 구실로 300명이 넘는 개신교도들을 모아 몽둥이를 들고 수류를 습격하여 천주교 신자 조일판을 폭행한 사건, 12월 11일 페네 신부의 공소순방 때 금구 접주리에서 개신교도들이 마부를 집단 폭행하여 페네 신부가 발포한 사건 등이다. 이와 같이 수류 분당 구역에서 개신교도와의 충돌이 발생한 것은 반외세를 기치로 내세운 동학농민운동의 본고장이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개신교도 최중진의 선교활동의 무대이기도 한 금구·태인·정읍에서 사목 순방을 하던 뮌텔 주교의 요란한 행차가⁷¹⁾ 천주교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했기 때문이다.⁷²⁾

의병이 신부의 사제관을 공격한 사건이 1건이다. 즉, 수류 분당 페네 신부가 1909년 5월 초 연례피정을 마치고 귀가하였더니, 의병들이 5월 1일과 2일 밤 사이에 사제관의 창과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페네 신부의 총이며 은시계, 모든 가구와 살림, 옷까지 털어간 사건이다.⁷³⁾ 1907년 일제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호남지역에서 의병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퇴재 본당과 수류 본당의 산간지역 공소 신자들이 의병들에게 많이 시달렸다.⁷⁴⁾

친일세력인 一進會가 천주교회를 공격한 사안이 3건이다. 1907년 7월

71) 뮌텔 주교가 1905년 11월 24일 태인 능다리(정읍군 산내면)를 방문하였을 때는 사인교 2대, 집꾼 4명, 말 10필, 그리고 200여 명이 행렬을 이루었고, 11월 25일 수류 본당을 방문할 때에는 관청에서 아전들이 영접을 나오고, 사인교 3대, 2인교 1대, 20여 필의 말과 당나귀, 300여 명이 행렬을 이루는 등 뮌텔 주교의 행차는 가는 곳마다 장관을 이루었다(김진소, 『전주교구사』 I, 679쪽; 『뮌텔주교일기』 I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472~475쪽).

72) 김진소, 『전주교구사』 I, 678~683쪽.

73) 김진소, 『전주교구사』 I, 585쪽.

74) 김진소, 『전주교구사』 I, 583~585쪽.

고종의 讓位와 한국 군대의 강제 해산을 계기로 항일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일진회가 自衛團을 조직해 의병탄압에 앞장섰으나, 전주교회가 신자들에게 가입 의무가 없는 자위단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자, 일제가 1908년 2월 자위단 가입은 국민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가입을 강요하여 진안 어은동 본당 소속 교우 6명을 구속하고 어은동 본당 金洋洪 신부도 출두시켜 감금한 사건, 1908년 2월 14일 모두네 신부가 진안 수비대를 찾아가 김양홍 신부와 교우들을 부당하게 감금한 처사를 수비대장에게 따지다가 보초병 등에게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 진안 어은동 본당의 김양홍 신부가 총 5정을 사제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일진회원들이 문제 삼아 1908년 4월 8일 밀고하여, 수비대군과 경찰이 총 5정을 압수하고 김양홍 신부와 신자 3명을 의병과 내통한 죄목으로 구금한 사건 등이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교안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전주 9건, 금구 8건, 진안 6건, 고산 5건, 여산 4건, 정읍 4건, 용안 4건, 진산 3건, 태인 2건, 순창 2건, 부안 1건, 흥덕 1건, 고부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교안이 4건 이상 발생한 지역들은 전주에는 전주 본당, 금구에는 배재(수류) 본당, 진안에는 어은동 본당, 고산에는 고산(되재) 본당, 여산에는 나바위 본당, 정읍에는 신성리 본당이 설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안이 4건 이상 발생한 지역들은, <표 2>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대체로 교세가 강한 지역들이다. 이렇게 볼 때 전북지역의 교안은 지역별로는 대체로 본당이 설립되어 있고 교세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빈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박찬식이 전국의 교안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합치되는 것이다.⁷⁵⁾

그러나 고산은 전북지역에서 교세가 가장 큰 고을이었는데도, 교안 발생 건수는 전주·금구·진안에 이어 4위에 머물고 있다. 그 까닭은 전북 지역 중에서 고산 지역에 구 교우가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75) 박찬식, 앞의 논문, 55~57쪽.

있다. 즉, 고산은 산수가 험난하여 육신생활하기에는 살 만한 곳이 못 될 지 몰라도 생명을 보존하고, 수계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계속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그리하여 불랑 신부가 1879년 전라도 지역 공소들을 순방할 당시 고산에는 가장 많은 8개의 공소가 있었다.⁷⁶⁾ 이것은 고산에 구 교우가 가장 많이 살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교안을 야기하는 신도들은 구 교우들보다는 대개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문교우들이었다. 대부분의 구 교우들은 행실이 모범적이므로 비신자들로부터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선교사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었고, 주민이나 당국과의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거나 천주교의 명성에 위해를 끼친 일이 없었다.⁷⁷⁾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세가 강한 고산에서 교안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표 1〉 전북지역 교안의 시기별·지역별 건수

	전주	진안	금구	순창	태인	정읍	부안	홍덕	고부	김제	고산	진산	여산	용안	합계
1888		1									1				2
1890	2										1			1	4
1891				1			1								2
1892	1										1				2
1893				1											1
1894	2		1					1			1			1	6
1895			1												1
1896	2		1										1		4
1897	1	2	1		2										6
1898												2		1	3
1899													1		1
1900											1				1
1901	1									1					2
1902												1			1
1903													1		1

76) 김진소, 『전주교구사』 I, 409~410쪽.

77) 김진소, 『전주교구사』 I, 618~619쪽.

1904														1	1
1905			3			3			1				1		8
1907						1									1
1908		3													3
1909															1
합계	9	6	8	2	2	4	1	1	1	1	5	3	4	4	51

〈표 2〉 전북지역 교세통계표⁷⁸⁾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고산	962	790	815	815	863	880	895	1037	1102	1131	1185
진안	423	351	376	616	550	514	702	567	590	584	610
전주	931	416	393	410	379	321	209	357	423	514	473
함열		56	55	70	199	23	102	224	232	160	158
임피	112	41	61	60		107	94	140	135	99	69
부안	119	100	27	159	309	124	101	143	150	150	207
고부	95	71	44	22		21	30	37	33	33	32
정읍	122	121	127	97	90	219	169	197	140	199	181
고창	164	158	139	178	126	125				25	
순창	503	559	418	373	287	184	294	329	440	364	520
태인	135	138	117	105	134	218	284	259	215	292	388
임실	75	71	63	64	61	52					
용안		30	82	79	70	109	98	55	148	155	182
여산		41	30	69	71	67	75	89	100	95	100
장수	166	253	242	193	155	177	23	226	220	253	279
남원	137	113	63	28		61	48	72	79	60	99
용담	290	225	336		186	162	189	104			
무주	68	52	55	74	53	45		44	54	104	87
옥구		25	72			20	20		37	31	39
금구		32	173	41	76	51					
진산				173	159	138	152	138	43	69	171
익산									162	116	106
흥덕									28	42	41
김제											13
합계	4335	3682	3725	3626	3768	3671	3536	4018	4331	4476	4940

7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호남교회사연구소 편, 『전주교 전주교구사 연구 자료집 제2집』(1882~1986 교세통계표), 빅벨출판사, 1987.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10
고산	1209	1289	1374	1170	1216	1029	1189	1147	1206	1321	1393
진안	725	793	828	920	962	986	1044	1131	1162	1215	965
전주	586	436	588	1471	768	901	716	709	850	931	1357
함열	99	171	139	191	209	246	262	315	364	234	301
임피	131	75		120	137	151	136	93	93	102	210
부안	256	268	260	258	265	280	289	331	352	403	390
고부				31		36	47	43	24	24	
정읍	186	299	215	263	303	380	420	444	442	495	608
고창				46	57	39	41	37	88	81	
순창	546	401	548	457	489	382	331	350	368	360	293
태인	466	479	321	657	714	1246	838	852	931	899	925
임실				35			118	216	309	391	469
용안	229	338	591	338	385	449	414	383	419	497	601
여산	131	129	158	281	221	211	306	571	324	352	748
장수	299	434	565	451	376	379	414	401	429	461	807
남원	171	67		80	168	152	158	166	213	211	
용담	88	88	96	14	92	99	114	113	97	91	75
무주				23	23	32	25		27		46
옥구											
금구	156	156	710	1921	450	389	523	619	738	797	1002
진산	142	142	95	156	126	134	170	201	178	185	131
익산	59	59	60	187	194	145	252	306	230	367	508
홍덕			41	54	80	83	79	38	72	79	56
김제				47			84	130	174	169	181
합계	5479	5479	6589	9441	7235	7749	7970	8596	9090	9665	11066

3.2 교안의 유형

교안의 유형에 대해서는 박찬식이 전국의 교안을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교안을 둘러싼 대립 구도, 교안의 원인, 교안의 전개 양상을 기준으로 삼아 교안의 유형을 분류한 선행 연구가 있다.⁷⁹⁾ 전북지역 교안을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박찬식이 시도한 분류 방식을 따라 전북지역 교안의 유형을 분류하기로 한다.

79) 김진소, 『전주교구사』 I, 605~683쪽; 박찬식, 앞의 책, 57~77쪽.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안 51건을 대립구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표 3> 참고), 지방 관리 층⁸⁰⁾과의 대립 사안이 19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반·토호 층⁸¹⁾과의 대립 사안이 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반 민인 층⁸²⁾과의 대립 사안이 4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민인 층과의 대립 사안 40건 가운데에는 집단적으로 敎民과 대립했던 사안이 15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학농민군에 의한 공격이 7건에 이르고, 1905년 이후 등장하는 개신교회 세력의 천주교 배격 사례가 4건, 의병의 천주교 배격 사례가 1건, 친일세력인 일진회 자위단원의 천주교 배격 사례가 3건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집단적으로 민인들이 교회 측과 대립했던 사안은 1899년 강경포 교안 1건이다.

이 가운데 지방 관리 층과의 대립 사안 19건과 향반·토호 층과의 대립 사안 7건을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 관리 층과의 대립 사안 19건은 전기인 1886년부터 1894년까지 발생한 사안이 5건, 중기인 1895년부터 1903까지 발생한 사안이 11건, 후기인 1904년부터 1909년까지 발생한 사안이 2건으로, 중기에 발생한 사안이 가장 많다. 그리고 향반·토호 층과의 대립 사안 7건도 전기에 발생한 사안이 2건, 중기에 발생한 사안이 5건, 후기에 발생한 사안이 0건으로, 중기에 발생한 사안이 가장 많다. 이것은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놓고 천주교회와 지방 관리 및 향반·토호 층의 대립이 중기에 심각하게 전개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한편 일반 민인 층과의 대립 40건을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전기에 발생한 사안이 14건, 중기에 발생한 사안이 13건, 후기에 발생한 사안이 13건으로, 시기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일

80) 지방 관리 층의 범주에는 관찰사·부사·군수와 같은 지방관뿐만 아니라 일반 관속류·향리층·장교층 등의 하급관리 층을 포함시켜 놓았다(박찬식, 앞의 책, 59쪽).

81) 향반·토호 층은 향임을 비롯한 향반 층과 향촌사회에서 유력 지배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던 전직 관리 계층, 사족집단 등의 토호 층을 병칭하는 계층을 말한다(박찬식, 앞의 책, 59쪽).

82) 일반 민인 층에는 동학농민군이나 보부상 세력, 개신교도, 일진회원, 의병 같은 집단도 포함시켰다(박찬식, 앞의 책, 59쪽).

반 민인 층과의 대립 사안 가운데는 1894년 동학농민군에 의한 공격 사례 6건 외에도 1905년 이후 새로 등장한 개신교도, 의병, 친일세력인 일진회의 자위단원 등의 천주교 배경 사례 8건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다음으로 교안의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서양인·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재산 문제, 채무·금전 문제, 조세·지대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가 1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고, 지방관의 수탈이 4건, 신부·신자의 월권·발포가 2건, 산송이 2건, 의례·종교 문제가 1건, 기타가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전북지역 교안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로 척사론적인 종교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북지역 교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박찬식이 전국의 교안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결과, 즉 총 141건 가운데 토지·재산 문제, 채무·금전 문제, 조세·지대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가 66건으로 가장 많고, 서양인·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1886년 이전부터 있어 왔던 척사론적 교회 배경이 그 다음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정 반대의 현상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상반된 현상은 전북지역이 반외세의 구호를 내세운 동학농민의 중심 무대였다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전북 고부에서 일어나 전북지역 전역을 휩쓸었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농민군에 가담하기를 거절하여, 동학농민군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원수로 여긴 탓에 천주교회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⁸³⁾ 특히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뒤에도 그 잔존 세력이 계속 활동하며 반외세의 분위기를 이어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⁴⁾

83) 『서울교구연보』(I), 1894년도 보고서, 160쪽.

84) 관리들이나 지주들이 여전히 토색질과 수탈을 일삼자 1903년 말부터 동학농민군이 재봉기를 준비하였는데, 동학농민군의 목표는 친러파의 우두머리인 李容弼과 백 아무개를 살해하고, 다음은 서양인을 추방하는 것이라 하였다. 서양인이 한국에 들어온 후로 과세가 부여되고, 곡물 값이 올랐고, 정세도 전보다 혼란한 것은 물론, 국왕이

다음으로 전북지역 교안의 원인을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전기인 1886년부터 1894년까지 발생한 교안 17건의 원인은 서양인·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재산 문제, 채무·금전 문제, 조세·지대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가 2건, 신부·신자의 월권·발포가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보아 전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서양인·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교안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기에는 교안의 주요 원인이 척사론적인 종교적 대립에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중기인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발생한 교안 20건의 원인은 토지·재산 문제, 채무·금전 문제, 조세·지대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서양인·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5건, 지방관 수탈이 3건, 산송이 2건, 신부·신자의 월권·발포가 1건, 기타가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에 서양인·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교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과 달리 중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교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기에는 전기와 달리 교안의 주요 원인이 사회경제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에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후기인 1904년부터 1909년까지 발생한 교안 14건의 원인은 서양인·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재산 문제, 채무·금전 문제, 조세·지대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가 2건, 종교·의례가 1건이다. 중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교안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과 달리 후기에는 전기 때와 마찬가지로 서양인·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교안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후기에는 교안의 주요 원인이 전기와 마찬가지로 척사론적인 종교적 대립에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별 분석 결과는 박찬식의 전국 교안의 시기별 분석 결과와 합치되는 것이다.⁸⁵⁾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서양인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진소, 『전주교구사』 I, 581~583쪽).

85) 박찬식, 앞의 책, 61~64쪽, 교안의 대립 구도와 원인·전개 양상을 정리한 <표 7> 참조.

다음으로 교안의 전개 양상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 전기에는 천주교회가 지역사회를 공격하는 사례가 신부의 개입 1건, 민인·관장에게 사적 형벌을 가한 사안 1건 모두 2건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지역사회가 천주교회를 공격하는 사례는 신자 체포·처벌이 5건, 신자 공격이 8건, 신부 공격이 6건으로, 모두 19건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천주교회가 지역사회에 의해 배격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한불조약이 비준된 뒤에도 프랑스 선교사들과 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인 입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중기에는 천주교회가 지역사회를 공격하는 사례가 관·민 공격 2건, 신부의 개입 11건, 민인·관장에게 사적 형벌을 가한 사안 5건으로, 모두 17건에 달하였다. 즉, 전기에 2건에 불과하던 전체 건수가 중기에 1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신부의 개입이 전기에 1건에 불과하였으나 중기에 1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민인·관장에게 사적 형벌을 가한 사안도 전기에 1건에 불과했으나 중기에 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에 지역사회가 천주교회를 공격하는 사례는 전기에 19건에 달하던 전체 건수가 중기에 16건으로 줄었다. 그리고 신자 체포·처벌은 전기에 5건이던 것이 중기에 8건으로 늘었지만, 신자 공격은 전기에 8건에 달하던 것이 중기에 그 절반인 4건으로 줄고, 신부 공격도 전기에 6건에 달하던 것이 중기에는 그 절반인 3건으로 줄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지역사회가 천주교회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에 뮌헨 주교의 매우 높은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선교사들이 洋大人의 위세를 부리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후기에는 천주교회가 지역사회를 공격하는 사례가 신부의 개입 1건에 불과하다. 중기에 17건에 달하던 전체 건수가 후기에 1건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에 지역사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전체 건수는 중기에 16건이었던 것이 후기에 17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천주교회가 지역사회에 의해 다시 압도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시기에 천주교회를 공격하는 사회세력으로 1905년 이후 새로 등장하는 개신교도, 일제의 비호를 받는 친일세력인 일진회의 자위단원, 친일세

력인 일진회를 공격하는 의병 등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것은 한국천주교회가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뮌헨 주교가 일제의 규제와 압박을 받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안 전개 양상의 분석 결과도 박찬식의 전국 교안 전개 양상의 분석 결과와 합치되는 것이다.⁸⁶⁾

4. 맺음말

이제까지 1886년 한불조약 이후 천주교회의 위상 변화와 전북지역 천주교회의 변화, 그리고 전북지역 교안의 전개와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제 이 글을 통하여 알아본 몇 가지 사실들을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1886년 한불조약의 체결로 프랑스 선교사들은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전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894년까지는 정부의 천주교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이 유지되었으나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뮌헨 주교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져 교회의 각종 현안들에 적극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04년부터는 일제의 침략으로 규제와 압박을 받게 되고 프랑스 정부마저 한국천주교회의 현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한불조약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대낮에 말을 타고 사목방문을 다니게 되었고,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섞여 사는 마을에 공소가 설립되어 천주교회와 지역사회가 마주보게 되었다. 또한 신자들이 점차 산간지역 교우촌에서 평야지역으로 이주해 갔고, 지역 본당이 설립되어 신부가 상주하는 성당에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교안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안은 51건으로, 전기(1886~1894)와 후기(1895~

86) 박찬식, 앞의 책, 66쪽.

1903)보다 중기(1895~1903)에 가장 빈발했다. 이는 이 시기에 뮌텔 주교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져 선교사들이 전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洋大人으로 위세를 부리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교안의 원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경제적인 문제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박찬식의 전국 교안 분석 결과와 차이가 난다. 그러나 시기별로 나눠 보면 후기에는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중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박찬식의 전국 교안 분석 결과와 합치된다. 교안의 전개 양상도 박찬식의 전국 교안 분석 결과와 같이 전기와 후기에는 천주교회가 지역사회에 압도당하였던 반면에, 중기에는 천주교회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 지역사회가 천주교회에 의해 압도당하였다.

〈표 3〉 전북지역 교안의 구도와 원인 및 전개 양상

번호	연도	지역	대립구도		교안의 원인										교안의 전개 양상						
			교회 對 지방관 리	교회 對 왕반도 호	교회 對 인민	서양인 · 천주교 에 대한 반감	신부 · 신자의 활동 · 발포	외래 · 종교 문제	산송	토지 · 재산 문제	채무 · 금전 문제	조세 · 지대 문제	지방 관리 수탈	기타	교회		비교회				
															관 · 민 공격	주교 · 신부 의 개입	민인 · 관장 에게 사회 형벌	신자 체포 · 처벌	신자 공격	신부 공격	민란
1	1888	진안 어은동	○		○	○												○			
2	1888	라푸르카드 신부 공소	○			○							○					○			
3	1890	고산 석장리			○	○													○		
4	1890	전주 소양		○	○	○													○		
5	1890	전주 소양		○	○	○													○	○	
6	1890	용안	○			○												○			
7	1891	순창			○	○												○			
8	1891	부안 무내미	○				○										○		○		
9	1892	전주	○		○						○					○		○		○	
10	1892	고산 떡구니			○	○													○		
11	1893	순창 내동			○	○														○	

12	1894	전주			○	○													○	
13	1894	전주			○	○													○	
14	1894	금구 배재			○	○													○	
15	1894	용안 돈다산			○	○													○	
16	1894	고산 퇴재			○	○													○	
17	1894	홍덕			○	○													○	
18	1895	금구 수류		○		○												○		
19	1896	전주	○								○					○	○			
20	1896	여산 나바위		○	○				○							○		○		
21	1896	전주	○		○				○							○				
22	1896	금구			○				○							○		○		
23	1896	금구 원평			○	○													○	○
24	1897	진안	○								○							○		
25	1897	태인	○	○	○	○	○									○		○		
26	1897	태인	○		○				○						○	○		○		
27	1897	진안			○					○								○		
28	1897	전주			○				○									○		
29	1898	용안	○		○				○							○			○	○
30	1898	진산	○			○												○		
31	1898	진산	○						○							○				
32	1899	여산 나바위		○	○		○			○					○	○	○		○	○
33	1900	운주 고성리	○	○	○	○												○		
34	1901	전주			○				○							○	○			
35	1901	김계	○										○						○	
36	1902	진산	○								○					○				
37	1903	여산 나바위			○			○												
38	1904	용안 안대동			○	○													○	
39	1905	여산	○					○										○		
40	1905	금구 수류	○		○	○													○	○
41	1905	고부 덕촌			○	○													○	
42	1905	금구 수류			○	○													○	
43	1905	금구 접주리			○	○										○			○	

44	1905	정읍 신성리			O	O													O		
45	1905	정읍 신성리			O					O									O		
46	1905	정읍 신성리			O					O									O		
47	1907	정읍 신성리			O	O													O		
48	1908	진안 어은동	O			O													O	O	
49	1908	진안	O			O														O	
50	1908	진안 어은동	O			O													O	O	
51	1909	금구 수류			O	O														O	
합 계			18	7	40	31	2	1	2	6	5	1	4	1	2	13	6	14	23	13	1

〈표 4〉 전북지역 전체 교안 일람표

번호	연도	발생지역	대립구도		사건의 개요	근거 자료
			교회	비교회		
1	1888	진안 어은동	공소 교민	촌민, 향리 포졸, 진안 현감	촌민에게 매수된 아전과 포졸 이 공소 습격, 교민들을 옥에 가둠.	M-1888 ; 연보 1888
2	1888	라푸르카 드 신부 공소	공소회장	관장, 포졸	관장이 돈이 많은 공소회장을 구금하고 석방 조건으로 돈 요 구, 포졸도 돈 요구.	M-1888
3	1890	고산 석장리	공소 교민	촌민	보두네 신부가 공소를 방문하 고 떠난 뒤 촌민들이 작당하여 교민들을 추방시키려 함.	M-1890-63
4	1890	전주 소양 약바우	교우촌 교민	풍헌, 촌민	풍헌 참여죄, 촌민 등이 예비 신자 박문겸을 추방하고 전담 의 곡식을 탈취하려고 함.	M-1890-52
5	1890	전주 소양 약바우, 대성동	보두네 신부, 교민	풍헌, 촌민	풍헌 참여죄와 최봉석이 주민 들과 함께 보두네 신부와 교민 들에게 옥설과 폭언을 함.	M-1890-56, 57, 61, 64, 65, 70, 72, 81, 84 ; 法案 286
6	1890	용안	교민	용안 군수	군수가 수탈을 일삼자 주민들 이 폭동 일으킴. 군수는 교민 을 폭동 주모자로 구금함.	M-1890-53, 54, 58, 60
7	1891	순창	교민	촌민	교민이라는 이유로 촌민의 모 함을 받아 투옥되고 재산도 빼 앗김.	M-1891-87, 88 ; 일기 1891.10.30

8	1891	부안 무내미	공소 교민, 신부 복사	관의 사령	마을 수색을 못 하게 막은 교민을 구타한 관의 사령을 붙잡아 매놓고 나무람.	전교약기 22-25
9	1892	전주	보두네 신부, 최재우	최 감찰, 감사, 진영 교졸	학방 설립기금 회수 과정에서 최 감찰이 최재우 가족을 폭행하고 교졸이 사제관 침입.	M-1892-100~108, 1893-8, 129, 165, 186
10	1892	고산 먹구니	공소 교민	촌민	교민들이 비신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를 당함.	M-1891-92
11	1893	순창 내동	조조 신부, 복사	촌민	촌민들이 말을 타고 사목순방을 가는 조조 신부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함.	전교약기 26-30
12	1894	전주	보두네 신부	동학농민군	사제관을 약탈하고 파괴함. 그리고 신학생 김 토마스에게 총상 입힘.	M-1894-260 ; 여명기 232 ; 法案 607
13	1894	전주	교민	동학농민군	교민들 집 다섯 채가 불에 탐.	M-1894-260 ; 여명기 232 ; 法案 607
14	1894	금구 배재	조조 신부	동학농민군	배재의 조조 신부가 여러 번 습격을 당하고 총으로 위협을 받음.	전주교구사 552
15	1894	용안 돈다산	교민 박제원	동학농민군	수십 명이 집에 돌입하여 성교서 등을 불 지르고 쫓아내 식구가 유리길식함.	전교약기 31
16	1894	고산 되재	비에모 신부	동학농민군	되재 성당을 습격하여 성화들과 예수성심상을 파괴함.	전주교구사 558
17	1894	흥덕	교민 서 모	동학농민군	장작더미 위에 앉혀 놓고 불을 질렀는데, 농민군 한 사람이 끌어내 목숨만은 건짐.	M-1895-4
18	1895	금구 수류	라크루 신부, 복사	이씨 양반	양인에 반감을 지닌, 본당 이전 예정지의 이씨 양반을 불러 무릎 꿇리고 혼쭐 냄.	전교약기 수류성당 편
19	1896	전주	보두네 신부, 복사	익산 군수	1888년 진안 어은동 공소 교민의 재산을 몰수한 군수를 불러다 매달고 잘못을 추궁.	경주 계림김씨 문중 천주교 약사 28~39
20	1896	여산 나바위	교민, 위텔 주교	부여 백 주사	교민이 자신의 전산에 백 주사가 묘를 쓰려는 것을 막다가 폭행당해, 주교가 개입.	일기 1896.11.21, 11.23
21	1896	전주	교민 박문겸 형제	박주연, 전라 감사	사촌간의 재산 분쟁에서 박주연이 승소. 감사와 결탁했다고 보고 보두네 신부가 개입.	M-1896-16, 18 ; 소장 1897.5
22	1896	금구	황청중,	주민	본래 동학을 하다가 귀화한 후	司法案報 갑

			박사옥		다시 천주교에 들어가 각처에 출몰하며 백성들 침학.	1896.10.16
23	1897	금구 원평	뮈텔 주교 마부, 수행 교민	주막의 사금 채집자들	원평 장터에서 주막 사람들이 주교 행렬의 횡불을 빼앗으려 해 수행 교민들과 싸움 발생.	일기 1897.1.15; 전주교구사 495
24	1897	진안	교민	진산 현감, 아전	교민이 경작하는 토지를 진산 현감이 둔전답이라 하여 빼앗 으려 해서 모두네 신부 개입.	M-1897
25	1897	태인	교민, 데에 ·라크루 신부	마을의 세도가	교민 이씨가 비신자 마을의 부 자이고 세도가 있는 유씨에게 폭행당해, 신부들이 개입.	M-1897
26	1897	태인	교민, 데에·라 크루 신부	촌민, 태인 군수	논에 몰대는 권리로 교민이 촌 민에게 상해 입히자, 군수가 교민을 체포, 신부가 개입.	全羅南北來案 1897.8.10, 8.25; M-1897-136
27	1897	진안	조원홍 등 교민	촌민 한창희	조원홍 등이 양인 牌旨라 하여 둔감차인을 교당에 감금하고 조세 거부.	M-1897-31, 45, 33
28	1897	전주	천주교당 학도	김하서의 죽인	천주교당의 학도 김도윤 등이 김하서가 犯用한 南原稅錢을 김하서 죽인들에게 징수.	全羅南北來案 1897.4.2, 5.22
29	1898	용안	교민, 베르모렐 신부	촌민, 용안 군수	경작권 문제로 교민을 폭행한 노인이 밤에 변사하자 교민을 살인죄로 고발해, 신부 개입.	M-1898-111, 112, 126
30	1898	진산	교민, 미알롱 신부	진산 군수	천주교 신도라는 이유로 두 신 문교우가 관아로 끌려가 매를 몹시 맞아 신부가 개입.	M-1898, 1899-127; 일기 1898.11.18; 法案 983, 984, 999, 1000
31	1898	진산	교민(서리)	군수	천주교에 입교한 서리가 공전 을 횡령하고 교회의 비호를 받 으며 군수와 대립.	全羅南北來案 1898.12.25, 1899.1.13, 2.17
32	1899	여산 나바위	교민, 베르모렐 신부	조흥도, 최성진 등 민인	염상과 교민의 염가를 둘러싼 싸움에 신부가 개입. 향임들이 반발해 민란으로 확대.	忠淸南北道去來案 1891.4.6; 法案 1053, 1054, 1063, 1076 등
33	1900	운주	교민	유생, 양반, 촌민, 수령	중국 의화단 봉기의 영향으로 유생, 양반, 촌민 등이 교민을 추방하고 수령이 교우 투옥.	전주교구사 645~646
34	1901	전주	김지환, 보두네 신부	홍현수의 종질	교민이 신부의 개입으로 민인 의 도조와 문권을 탈취. 관이 검거령 내리자 김지환 보호.	M-1902-214; 소장 1901.5
35	1901	김제	교민	김제 군수	교민들이 사찰의 산목을 벌목, 군수가 금령을 내림.	황성신문 1901.5.12.5

36	1902	진산	교민	이방 하낙두, 하대여	이방 하낙두가 교민들에게 활석을 헐값으로 매수, 신부가 이의 제기하자 교민들 협박.	M-1902-193, 1903-15, 27
37	1903	여산 나바위	교민	주민	교민 박씨가 집안의 묘지가 있는 산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발생하자 진정서 제출.	M-1093-14
38	1094	용안 안대동	교민	동학농민군	용안 안대동 교우촌에 침입하여 쌀가게를 강탈하고 교우촌에 방화함.	조선교구통신문 1904.1.24
39	1905	여산	교민	여산 군수	군수가 향교와 문묘 보수비를 할당해, 교민들이 이의 면제를 요구했다가 불기를 맞음.	전주교구사 653
40	1905	금구 수류	페네 신부, 마부	개신교도 최씨	마부와 싸우고 신부에게 욕설한 개신교도가 진정. 감영에서 신부 소환, 마부 체포령.	M-1905-126, 43; 法案 2026; 일기 1905.4.4
41	1905	고부 덕촌	페네 신부의 마부	개신교 목사, 교도	주교 일행 순방 때 고부 덕촌에서 개신교 목사, 교도가 페네 신부 마부 폭행, 난투극.	M-1905-198
42	1905	금구 수류	수류 본당 교우들	최중진 등 개신교도들	최중진 등 개신교도들이 수류를 습격해 조인관을 태인 매개로 끌고 가 폭행함.	M-1906-189, 197, 198; 일기 1905.12.5
43	1905	금구 접주리	복사, 마부, 페네 신부	최중진, 주원선 등 개신교도	페네 신부 순방 때 접주리에서 개신교도들이 마부를 폭행해 신부가 발포해 상해 입힘.	M-1906-198, 192; 전교약기
44	1905	정읍 신성리	교민	촌민	교민이 이웃 마을의 비신자에게 폭행당함. 마을 비신자들이 계속 교민에게 적의 품음.	일기 1905.11.25
45	1905	정읍 신성리	교민	촌민	성당 뒤 밭 가운데로 난 길을 교우들이 막자, 촌민들이 교우들과 싸워 강제로 길을 뚫음.	M-1905; 전주교구사 466
46	1905	정읍 신성리	교민	촌민	교민들이 짓는 소작논을 촌민들이 빼앗으려고 교민들과 싸워 교민이 중상을 입음.	M-1905; 전주교구사 466
47	1907	정읍 신성리	배사집, 김승연 신부	촌민	촌민 김춘화가 배사집 회장을 납치한 후 한밤중에 친척들과 성당에 쳐들어와 행패 부림.	M-0907; 전주교구사 467
48	1908	진안	교민, 김양홍 신부	자위단원	천주교회의 방첩에 따라 교민들이 자위단 가입을 거부하자 교민과 신부를 구속.	M-1908-15; 전주교구사 600
49	1908	진안	보두네 신부	수비대 일본군	보두네 신부가 진안 자위단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따지다가	M-1908-15; 전주교구사 600

					수비대군에게 폭행당함.	
50	1908	진안	김양홍 신부, 교민	수비대 일본군	수비대군이 총기문제로 김양 홍 신부와 어은동 교민들을 구 금하고 폭행함.	조선교구통신문 1908.5.11; 전주교구사 601
51	1909	금구 수류	폐네 신부	의병	의병들이 밤중에 사제관의 창 과 문을 부수고 들어와 총, 은 시계, 가구, 옷 등을 약탈.	M-1909-92

※ 근거 자료의 ‘M’은 『뮌헨문서』, ‘연보’는 『서울 교구 연보』, ‘전교약기’는 『전라도 전교 약기』, ‘일기’는 『뮌헨 주교 일기』, ‘소장’은 『外部訴狀』, ‘여명기’는 『신앙 자유의 여명기』를 가리킨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진소 편,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1집, 빅벨출판사, 1987.

김진소 편, 『천주교 전주교구사 연구자료집』 제2집, 빅벨출판사, 1987.

임충신 역, 『신앙 자유의 여명기』, 가톨릭출판사, 1966.

『경주 계림김씨 천주교 약사』(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국역 고종실록』.

『뮌헨문서』(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뮌헨 주교 일기』 I, 1895년 4월 20일,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뮌헨 주교 일기』 II, 1896년 1월 27일,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29쪽.

『뮌헨 주교 일기』 II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뮌헨 주교 일기』 4,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法案』(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소장).

『司法稟報』, 아세아문화사, 1988.

『서울교구연보』(I), 1890년도 보고서, 명동천주교회, 1984.

『外部訴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소장).

『全南北去來案』(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소장).

『전동 본당 100년사 자료집』 제1집, 천주교 전동 교회, 1992.

『전라도 전교 약기』(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조선교구통신문』1902~1921(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忠淸南北道去來案』(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프랑스외무부문서』 2, 「가톨릭에 관해 프랑스 공사와 조병식과 갖은 대담 내용」
(1888년 7월 6일), 국사편찬위원회, 2003.

『황성신문』

2. 참고 논저

2.1 논문

김태웅, 「조선말·대한제국기 뮌헨 주교의 정국 인식과 대정치권 활동」, 『교회사 연구』 37,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노용필, 「천주교의 신앙 자유 획득과 선교 자유 확립」, 『교회사 연구』 30,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박일근, 「한불조약 체결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86.

박찬식, 「韓末 天主敎會의 성격과 ‘敎案」, 『교회사 연구』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박찬식, 「교안과 교민조약 -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회사 연구』 27,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이원순, 「朝鮮末期社會의 對西敎問題 研究-敎案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5, 역사교육연구회, 1973.

이원순, 「한불조약과 종교자유 문제」, 『교회사 연구』 5,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최석우, 「한불조약과 신교자유」, 『金聲均敎授華甲記念論叢』, 한국사학회, 1969.

최석우, 「개화기의 천주교회」,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최종고, 「한국에 있어서 종교자유 법적 보장과정」, 『교회사 연구』 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2.2 단행본

김진소, 『전주교구사』 I, 도서출판 빅벨, 1998.

박찬식,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이원순, 『한국천주교회사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최석우, 『한국교회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Abstract

Conflicts between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Local Communities in Korea after the Korea-France Treaty (1886-1910)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Focusing on the anti-Christians Incidents in the Jeonbuk area

Seo, Jong-tae (Jeonju University)

After the Korea-France Treaty of 1886, French missionaries were free to do the work of evangelization in Korea under the protection of extraterritoriality and further the Catholic Church gained more stature in the country while Bishop Mutel who represented Korean Catholics served as political advisor to the Royal Family of Joseon. However, the Catholic Church in the Jeonbuk area which had remained isolated from the community before the Korea-France Treaty came into frequent conflict with local people, which spread anti-Catholic sentiment in the community. In the Jeonbuk area, as many as 51 different anti-Christians Incidents Kyoan, 教案 occurred between 1886 and 1910 and they were more frequent in the middle period (1895-1903) than in the early (1886-1894) and late (1904-1910) periods. Overall, a larger number of anti-Christians Incidents are found to have resulted from hostility towards Catholicism rather than economic issues. This result seems different from what has been found in nationwide analyses. Technically, however, there is a consistency between the results of analyses at community and nationwide levels in that the major cause of anti-Christians Incidents was hostility towards Catholicism in early and late periods and economic issues in the middle period. Like the findings of nationwide analyses, the community-based analysis of the developments of anti-Christians Incidents

reveals that during the early and late periods the Catholic Church was overpowered by the community, whereas the middle period witnessed the increased presence of the Catholic Church overpowering the community.

Key word: anti-Christians Incidents(Kyoan, 教案), anti-Christians Incidents in the Jeonbuk area, types of anti-Catholic movements, cause of anti-Catholic movements, the developments of anti-Catholic movements

서종태

소 속 :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전자우편 : sejong21@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5. 08. 07 / 심사완료일 2015. 09. 02 / 게재결정일 2015. 09. 12